

2018. 8. 1. 시행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

**2018. 8.**

# 목 차

제1장 개정 내용 .....	1
제2장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 흐름도 .....	2
제3장 건설현장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3
1.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	
2. 사업장적용	
3. 사업장가입자 적용	
4. 기준소득월액 특례 결정	
제4장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처리 프로세스 .....	12
1. 사업장 적용 신고	
2. 가입자 신고	
3. 보험료 결정 및 납부	
4. 보험료 납부 확인	
5. 사업장 탈퇴 신고	
제5장 인터넷 신고 .....	16
1. 국민연금 EDI 이용하기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별지 〉	
1. 자주하는 질문 (Q & A) .....	26
2.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개요 .....	30
3.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31
4. 사회보험 사후정산 제도 개요 .....	32
〈 서식 〉	
1.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	33

# 1 개정 내용

## 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2 개정 내용

-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근로자에 포함” 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준 구체화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내부 업무기준에 명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령에 명시(시행령 제2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 월 20일 이상 근로 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 월 8일 이상 근로 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 좌 동</li></ul>

## 3 적용 시기 등

- 시행일자 : 2018. 8. 1.
- 경과조치
  - 개정 법령 시행일(18. 8. 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기준을 2020. 7.31.까지 적용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사업장 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li> <li>- 당연적용 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신청서 제출</li> <li>- 경과조치 사업장은 입증서류 제출(필요시) (우편, FAX, 인터넷(<a href="http://www.4insure.or.kr">www.4insure.or.kr</a>), 방문)</li> </ul>	성립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가입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상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가입대상(취득),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상실)</li> <li>■ (소득변경)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li> </ul>	EDI로 신고
보험료 정기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월보험료 부과) 당월 15일까지의 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전자고지서 발송(매월 22일경)</li> <li>-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li> </ul>	(EDI) 다음달 5일까지
일괄 경정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5일까지의 변동신고를 기초로 일괄경정고지(EDI 전송)</li> <li>■ 사업장은 매월 6일 EDI시스템으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li> </ul>	
수시 경정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경정고지 전에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신청</li> <li>-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EDI로 신청</li> <li>* 지사에 내방(유선)하여 신청시 납부기한일까지 신청 가능</li> </ul>	(필요시)
보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li> <li>■ (납부) 일괄(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li> <li>- 전자납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li> </ul>	

### ①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 건설공사 사업장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② 사업장 적용

####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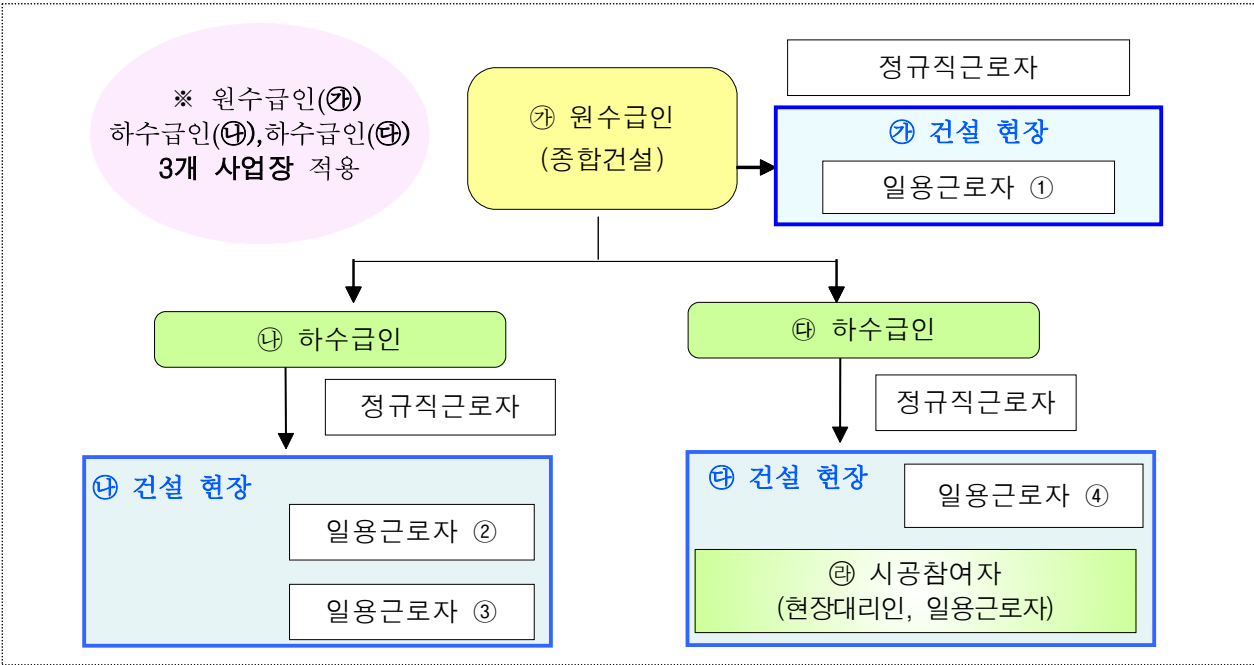
-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 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다.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예시)】



- 3개 사업장 (㉞ 원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각각 성립
  -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분리적용 사업장(4.당연적용-건설)으로 성립
-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건설현장 사업장(4.당연적용-건설)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각각의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 ㉞ 원수급인 건설현장 : 일용근로자 ①
  - ㉠ 하수급인 건설현장 : 일용근로자 ② + 일용근로자 ③
  - ㉡ 하수급인 건설현장 : 일용근로자 ④ + ㉡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건설업자가 아닌 “㉡ 시공참여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음
  -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이 금지됨 (관련근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

【건설현장 사업장 판단 확인 서류 (예시)】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확인
- (2)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근거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
- (3) 보완적 확인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지10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에 따른 건설공사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발급)”으로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인 경우 등은 계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및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도급계약서”로 확인

## 라. 경과조치 사업장

### ○ 대상

- 개정 법령 부칙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시행일("18. 8. 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 ○ 판단 및 인정기준

-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발주형태	경과조치 적용 기준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공사 착공일로 경과조치 건설현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2018. 8. 1. 전에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은 경과조치 적용
- 경과조치 사업장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서식 1>"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하고 입증서류 제출 시 인정
  - \* 서식 개정 : 보험료 일괄경정신청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 입증서류 : 입찰공고문, 원도급 공사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 1종
    -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시 사업개시일 등이 2018.8.1. 전인 경우 인정
    - \* 하수급 건설현장 사업장에 한하여 위의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갈음
- 다만,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이 2018. 8. 1. 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입증서류 생략 가능

【경과조치 사업장 (예시)】

시행일 2018.8.1.	적용방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입찰공고 + 계약</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②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③ 입찰공고 + 계약</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④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div>	① ~ ④ 종전규정(월 20일)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⑤ 입찰공고 + 계약</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⑥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div>	⑤ ~ ⑥ 개정규정(월 8일) 적용

☞ ③번 사례의 경우 공사계약서로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민간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발주자의 입찰공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로 제출 가능

※ 공공 공사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민간 공사의 입찰공고는 "발주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④번 사례의 하수급인 사업장인 경우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원도급계약서	원도급계약서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원도급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로 제출 가능
민간 공사		

### ③ 사업장가입자 적용

#### 가. 가입대상

-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前)	변경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li>*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li>*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li> </ul> </li> <li>-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b>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b>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 1개월 미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에 고용(근로)된 날부터 <b>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b> 제공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b>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ul> </li> </ul>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일

-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 ②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 초일(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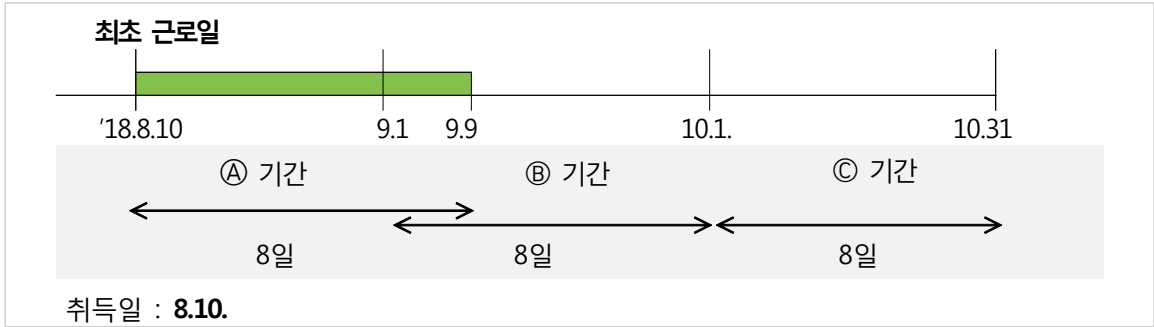
○ 자격상실일

-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그 익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 ② 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해당 최종월 초일(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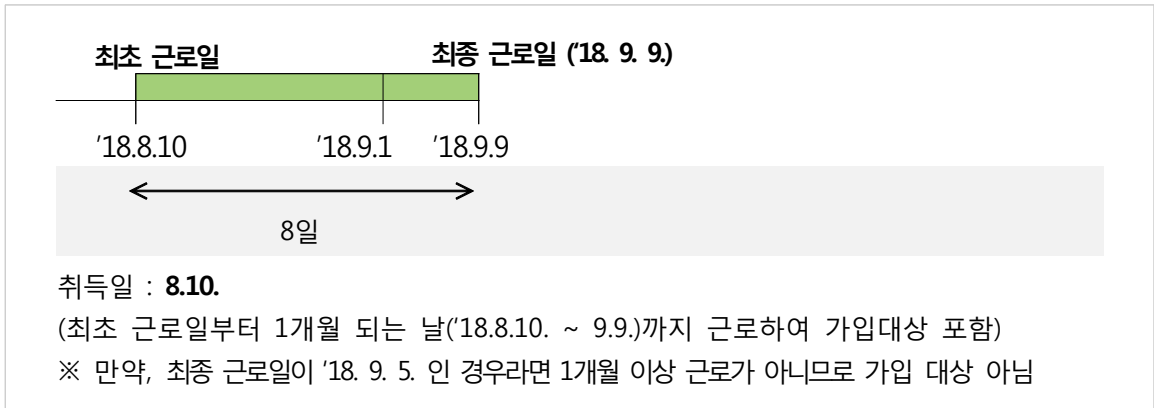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 자격취득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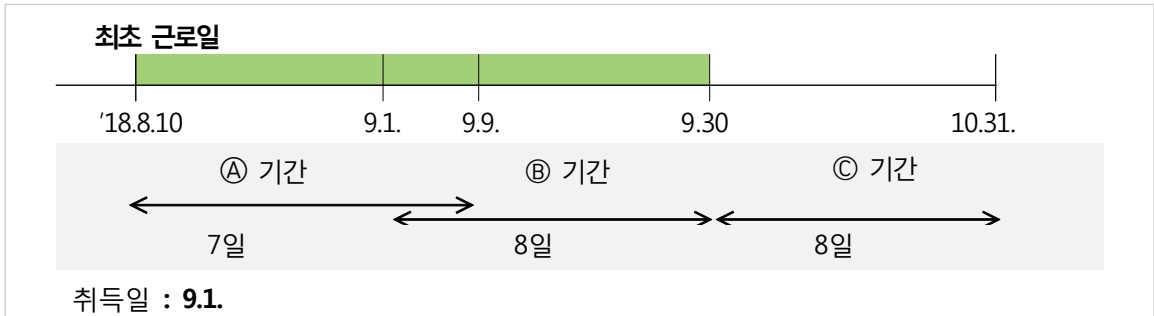
[사례①-1]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사례①-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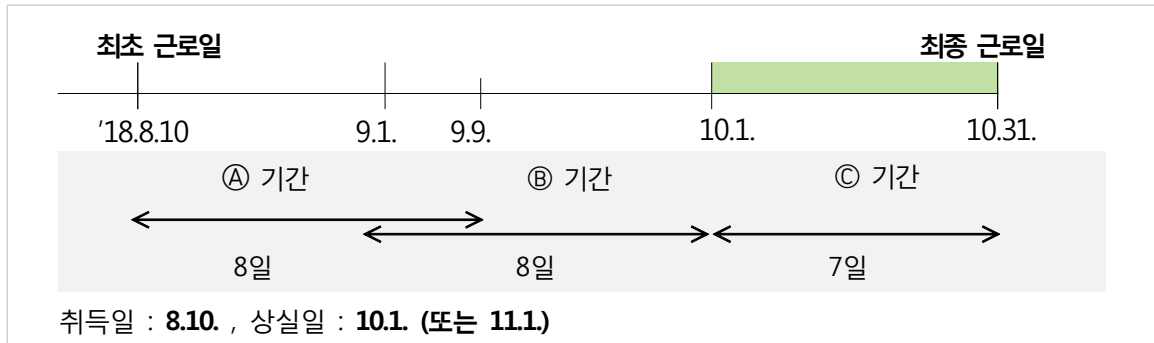
[사례②]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 초일(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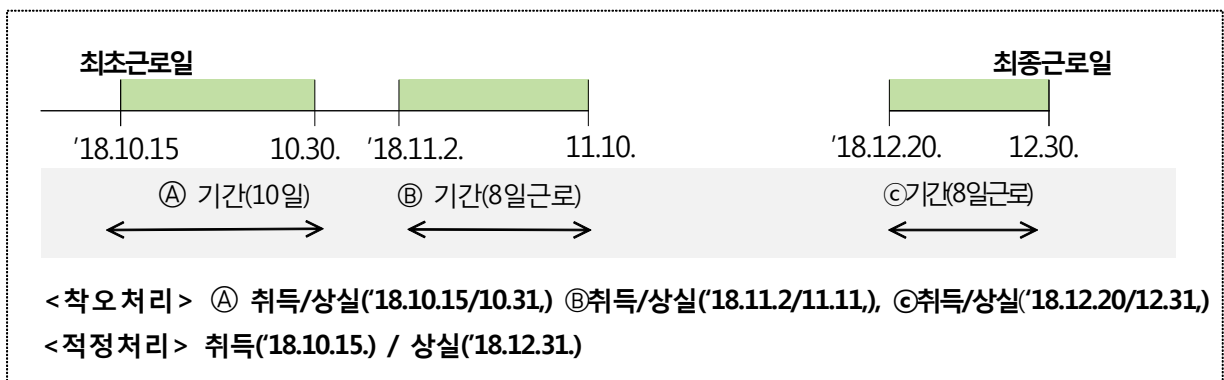
[사례②]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 초일(1일)

\* 단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가능



### 다. 유의사항

○ 자격 취득·상실 적정처리로 가입기간 불인정(보험료 미부과) 사례 방지



○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은 종전기준 적용

(Ⅱ. - ③ - “가. 가입대상”의 표 참조)

#### ④ 기준소득월액 특례 결정

가. 적용대상 : 건설현장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나. 적용기준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으로 결정

다. 특례 결정 방법

○ 자격취득(또는 납부재개) 시

- 결정기준 : 취득(재개)월의 실제 소득월액

- 적용기간 : 취득(재개)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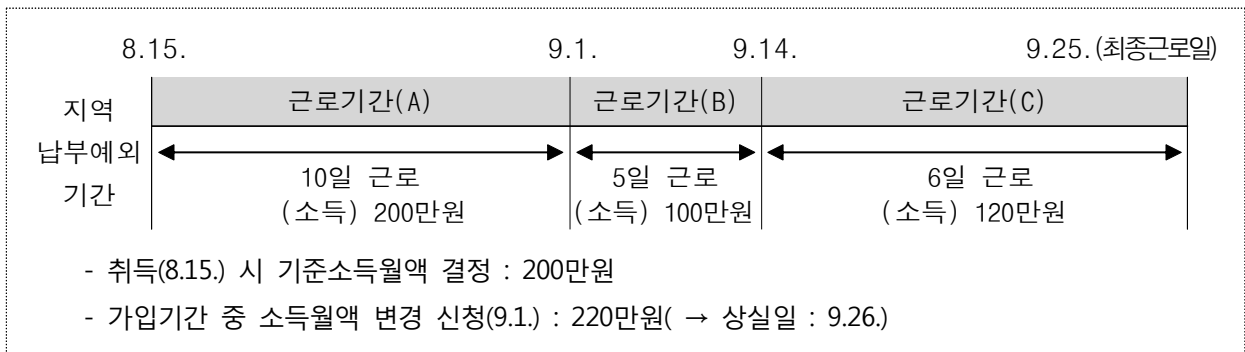
- 결정기준 :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한 매월 실제 소득월액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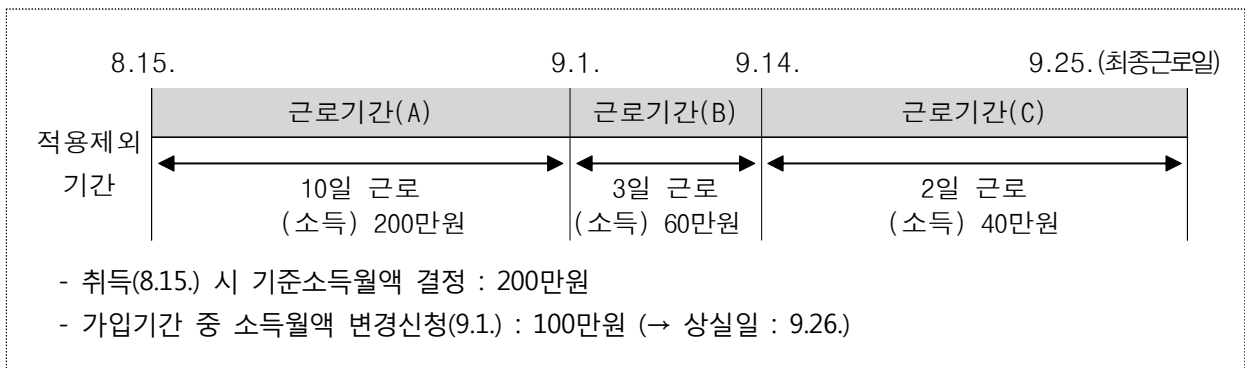
※ 매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소득월액 특례 결정 예시

[사례 ①]



[사례 ②]



## ① 사업장 적용 신고

### 1-1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

- 제출할 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공통서식)
  -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 ③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개정 공통서식)
    - 동 서식에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추가 작성
    - 전자고지 중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당연 신청
  - ④ (원도급 또는 하도급)공사계약서
    -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⑤ 경과조치 사업장 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해당 사업장에 한함)
    -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고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제출할 지사 : 국민연금 지사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 전자고지 신청서는 지사로 별도 제출

## ② 가입자 신고

### 2-1 일용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또는 상실 신고할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 (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일용근로자 고용 시 자격 취득신고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계약내용이 월 8일 이상인 자 취득 신고
    - \* 근로계약이 월 8일 미만이면, 실제 근무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자 취득신고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월 8일 이상인 자 취득 신고
- 일용근로자 고용관계 종료 시는 자격 상실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할 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③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 .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중 제외되는 자>
- .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 . 상호주의에 의해 우리 국민을 해당 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2-2 사업장 및 가입자 내용이 변경(정정)되었을 때**

- 신고할 사항
  - 사업장 내용변경 : 경과조치 사업장 해당여부,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가입자 내용변경 : 가입자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 ①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②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2-3 근로자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신고할 사항
  - 근로자의 월 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
- 제출할 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③ 보험료 결정 및 납부

#### 3-1 보험료 정기고지(→매월 22 ~ 25일 전자고지 발송)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결정 내역서 및 EDI 전자고지서(1차) 송부
- ※ 사업장에서 EDI 전자고지에서 우편고지를 희망 하거나, 다른 고지 방법을 희망하면 건보공단(콜센터)에 전화로 해지 또는 변경신청

#### 3-2 일괄 경정고지 (→매월 6일(5일이 휴일인 경우 보험료재산정일 다음날)

- 당월분 결정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 · 전자신청서'를 필수 제출
  - ☞ 일괄 경정고지 방법 : '경정결정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 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정기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오납 정산 또는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3-3 수시 경정고지신청 (→매월 9일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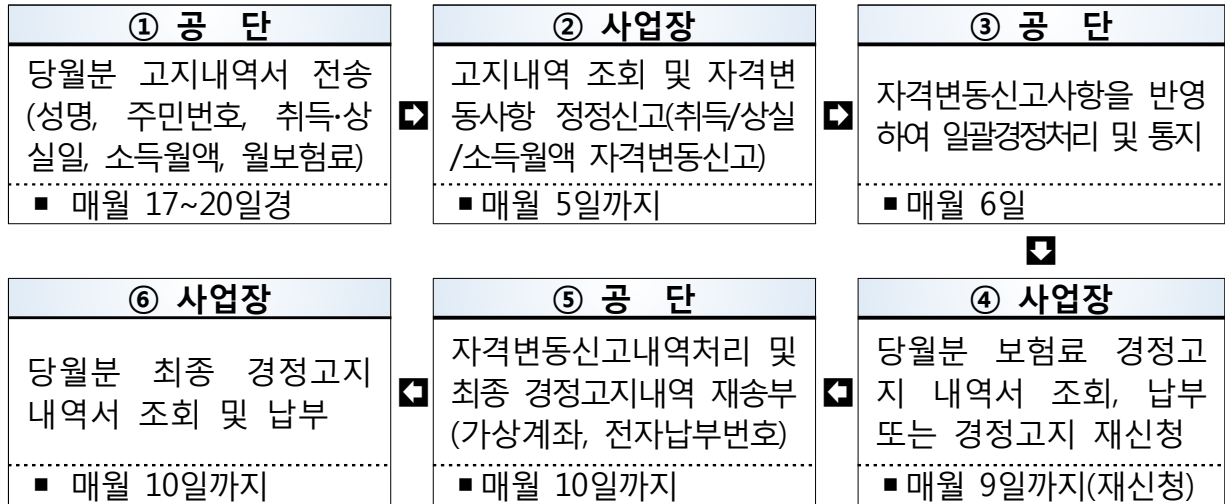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
  -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 건강보험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 3-4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 ▶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 4 보험료 납부 확인

4-1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사업장 단위는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확인서」로, 가입자 단위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가입자)」로 발급

☞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 5 사업장 탈퇴 신고

5-1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제출할 서류 : 사업장 탈퇴신고서 및 가입자 상실신고서
- 우편, Fax, 인터넷, 방문

## 5 인터넷 신고

### 1 국민연금 웹 EDI 이용하기

#### □ EDI서비스란?

- 방문, 팩스, 우편을 대신하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사업장 전용 전자신고(신청) 서비스
- 신고(청)서 전자발송, 처리결과 조회, 각종 통지문서 수신
- 별도의 이용료 없이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와 일부 이용수수료가 부과되는 사회보험 EDI가 있음

#### □ EDI서비스는 이용방법 및 절차

##### 가. EDI서비스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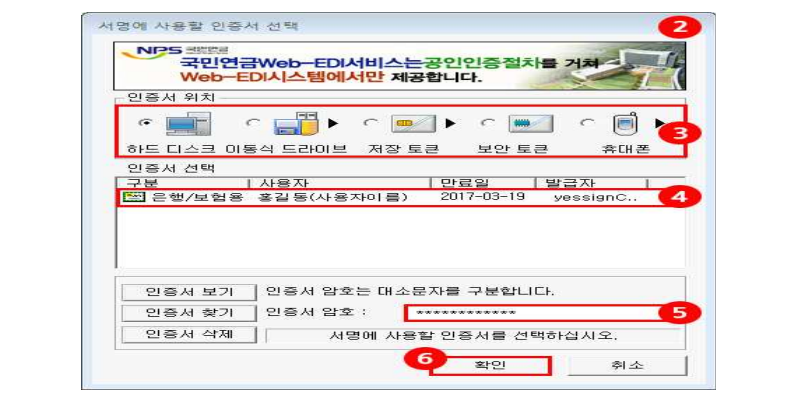
- ① (EDI 들어가기) 인터넷 주소창에 <https://edi.nps.or.kr> 입력 선택
- ② (EDI 서비스 이용)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 단, 분리적용사업장은 비밀번호 추가 입력

##### 나. 공인인증서 사용방법

사업장구분	사용가능 인증서	
	대표자 개인인증서(개인용)	법인인증서(사업자용)
개인사업자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법인사업자	사용 불가	사용 가능

-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에 책임대표로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인증서만 사용
- 모든 유효한 공인인증서는 사용가능하나,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사용 불가  
예) 국민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보건복지 분야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 다. 로그인하기

<p>①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 공인인증버튼 클릭</p>	
<p>② 인증서 선택 팝업창에서 ③ 인증서 위치 선택 ④ 인증서 선택 ⑤ 인증서 암호 입력 ⑥ 확인(로그인완료)</p>	

## 라. 신고서 작성하기

<p>4대 공통신고서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일괄 신고</p>	<p>연금고유 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신고 업무로, 국민연금에만 해당되는 신고</p>
<p>①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가입대상 입사</p> <p>②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자 퇴사</p> <p>③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가입자 성명/주민번호 등 변경</p> <p>④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의 주소/전화·팩스번호 등 변경</p> <p>⑤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 ⇒ 사업장 휴·폐업 등</p> <p>⑥ 고용보험 이직확인서</p>	<p>①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가입자 취득일, 상실일, 예외일, 납부희망여부 등 변경</p> <p>②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가입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p> <p>③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예외신청자의 복직신고</p> <p>④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사업장간 근무처 이동신고</p> <p>⑤ 분리적용사업장 등록/해지신고서</p> <p>⑥ 소득총액신고서</p> <p>⑦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서</p> <p>⑧ 소규모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p>
<p>건설일용직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신고 업무</p>	<p>파일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일용직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li> <li>• 건설일용직사업장 경정신청서</li> </ul> <p>⇒ [송수신문서]-[신고서처리결과]에서 신청결과 확인</p>	<p>대량자료 신고시 활용, 신고서별 파일사양서에 맞춰 파일작성 후 업로드</p>

## 마. 신고서 처리결과 확인하기



신고서 처리결과

01 사업장, 02 EDI서비스 접수, 03 송수신문서, 04 신고서 처리결과



6. 신고서 처리결과

연속번호	신고일 (사업장)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서적(명)	처리상태	확인여부 (사업장)	확인일 (연도)	통지일 (연도)	처리일 (연도)
1	송신	2016-08-09	NPS201601*****	사업장가입자특성신고	기안접수	완료	2016-08-09	2016-08-09	
2	송신	2016-08-05	NPS201601*****	사업장내용연장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8-05	2016-08-05	
3	송신	2016-08-03	NPS201601*****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계 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8-03	2016-08-03	
4	송신	2016-08-03	NPS201601*****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8-03	2016-08-03	
5	수신	2016-07-29	NPS201601*****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해위 신청서	오류	유지중			2016-07-29
6	송신	2016-07-29	NPS201601*****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해위 신청서	정상	완료	2016-07-29	2016-07-29	
7	수신	2016-07-29	NPS201601*****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해위 신청서	오류	완료	2016-07-29		
8	송신	2016-07-29	NPS201601*****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해위 신청서	정상	완료	2016-07-29	2016-07-29	
9	송신	2016-07-29	NPS201601*****	사업장내용연장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7-29	2016-07-29	
10	송신	2016-07-05	NPS201601*****	사업장활동(소멸)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7-05	2016-07-05	
11	송신	2016-07-05	NPS201601*****	사업장내용연장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7-05	2016-07-05	
12	송신	2016-07-05	NPS201601*****	사업장내용연장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7-05	2016-07-05	
13	송신	2016-07-04	NPS201601*****	사업장가입자특성신고	기안접수	완료	2016-07-04	2016-07-04	
14	송신	2016-07-04	NPS201601*****	사업장가입자특성신고	기안접수	완료	2016-07-04	2016-07-04	
15	수신	2016-07-01	NPS201601*****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오류	완료	2016-07-01		2016-07-01
16	송신	2016-07-01	NPS201601*****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정상	완료	2016-07-01	2016-07-01	
17	송신	2016-07-01	NPS201601*****	사업장가입자특성신고	기안접수	완료	2016-07-01	2016-07-01	
18	송신	2016-06-30	NPS201601*****	직장가입자자격특성신고(과부양자있는경우)	기안접수	완료	2016-06-30	2016-06-30	
19	송신	2016-06-30	NPS201601*****	직장가입자자격특성신고(과부양자있는경우)	기안접수	완료	2016-06-30	2016-06-30	
20	송신	2016-06-30	NPS201601*****	사업장가입자특성신고	기안접수	완료	2016-06-30	2016-06-30	
21	송신	2016-06-27	NPS201601*****	사업장내용연장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6-27	2016-06-27	
22	수신	2016-06-27	NPS201601*****	사업장내용연장신고서	기안접수	완료	2016-06-27	2016-06-27	

- ① 송신 : 사업장에서 신고서작성 후 4대 기관으로 전자 발송한 내역
  - ② 수신 : 각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처리결과를 송부 받음. 4대보험 공통신고(취득/상실)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신고서 처리 후 처리결과 통보
  - ③ 오류 :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통보됨. 오류내용 확인 후 재신고 또는 해당기관의 해당신고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 ④ 접수번호 : 클릭하여 문서 열기
- ※ 연금신고서의 경우, 오류처리 되었으나 담당자가 확인 후 정상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송수신문서】** 의 [연금통지문서]로 처리일의 다음날 '타 신고방법 or 지사 재처리결과 통지서' 로 추가 발송

## 바.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하기(증명서신청 클릭 >> 신청서 팝업)

1. 가입자 가입증명서	입사 또는 퇴사한 직원의 해당사업장 가입 이력(퇴사일 확인)
2. 사업장 가입증명서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현황(가입기간/보험료납부현황)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증명서	사업장의 월별 보험료 납부내역
4.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의 기간별 보험료 납부내역(퇴직금전환금 확인)
5.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월단위 사업장보험료 총액 확인 및 개인별 상세보험료 확인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자격변동신고마감일(매월15일)까지 처리된 변동내역 확인
7. 사업장가입자명부	사업장에 가입증인자/상실자/전체 대상자에 대한 명부
8.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소급 상실/변경시 부과취소금액을 반영한 보험료 변동내역
9.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93.1월~`99.3월 당시 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확인
10.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사용자부담금 총 납부금액 확인(필요경비 확인용)
1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EDI신청자료 ⇨ 국제협력센터 확인 후 발급
1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사업장가입자별, 사업장 월별 신청

## 사. 기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건설현장 사업장성립신고 바로가기")



## ② 사회보험 EDI서비스 이용하기

### □ EDI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하기

- (사회보험 EDI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http://bips.bizmeka.com> 입력
  - [EDI서비스가입]을 클릭 → 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함> 클릭 → 가입하고자 하는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등 입력 → 비밀번호 설정 후 요금 납부 방식 등 선택
  - (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사회보험 EDI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설치 후 가입정보로 로그인

### □ EDI 이용요금

- 이용요금은 EDI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하며,
-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료화하고, 6~9인 사업장의 이용요금은 공단에서 부담하여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단위 : 원)

근로자수	1~5인	6~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단일서비스 (국민/건강중 1개만 사용)	무료	1,000	2,500	3,700	3,800	4,000	6,000
복수서비스 (국민/건강 동시사용)	무료	1,900	4,750	7,030	7,220	7,600	11,400

### ③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하기

#### □ 포털사이트란?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자격·보험료 조회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 □ 포털서비스 이용하기

##### ○ 회원가입<sup>1)</sup> → 사업자 회원가입 → 회원정보 등록 → 공인인증서 등록<sup>2)</sup>

- 1) 회원가입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 2) 공인인증서 등록 기준
  -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 세부 이용방법 및 절차

##### 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① 민원신고나 증명서발급 메뉴 선택 시 보안프로그램 통합설치페이지로 이동
- ② 자동설치 페이지 표출되며 자동설치 진행되거나 실행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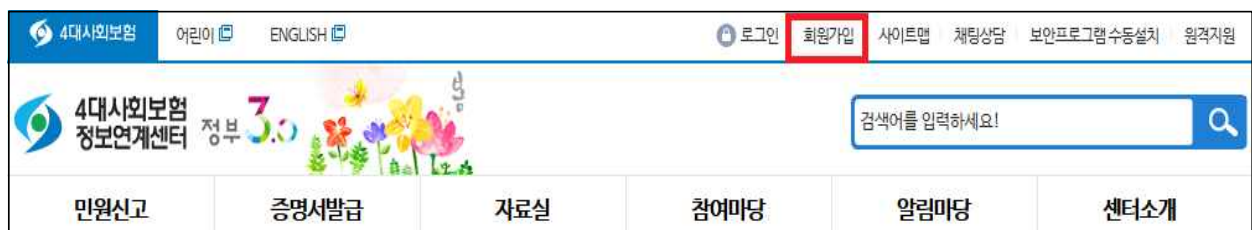


- ③ 5개 보안프로그램 순차적으로 설치 진행되고 설치 완료



##### 나. 회원가입절차

- 회원가입은 4대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사업장 회원』 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회원』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합니다.
- 메인화면 ⇒ 상단의 회원가입



## 다. 로그인

## □ 전자민원신고서 종류

구분	신고서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성립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탈퇴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내역변경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이체신청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내역변경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상실신고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신고
	건강보험 근무처 및 근무내역 변동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량민원신고(자격취득, 상실, 피부양자취득)

□ 건설현장 사업장 성립 신고

가. 사업장성립신고(공통항목 입력부분)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성립 신고

##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 적용(해당)/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 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원하시는 신고서를 선택하세요.**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작성예시 성립을 희망하는 보험의 신고서를 선택하면 선택한 신고서만 하단에 나타납니다.
건강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관계성립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관계성립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 [2] 표시는 조건필수 입력항목입니다.  
 간단한 용어 안내는 [?] 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기본 사업장 관리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자동처리 항목입니다. 임의로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식다운로드 도움말

나.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신고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 시 건설현장사업장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기간에 『시작일』 과 『종료일』 을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예) 2011-01-01 ~

건설현장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기간을 입력합니다.

- 경과조치 사업장여부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예) 2011-01-01 ~

**경과조치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경과조치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최초 발주형태	<input checked="" type="radio"/> 입찰공고 <input type="radio"/> 도급계약	입찰공고일/도급계약일자	예) 2011-01-01
-----------------------	---	---------	--	--------------	---------------

**※ 경과조치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이란?**  
 - "2018.8.1."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 사업장으로 "2020.7.31."까지는 종전규정(월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대상)을 적용하는 사업장



< 입찰공고/도급계약일 20180801이후 입력 시 오류메시지 화면 >

저장

- ①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가 '해당'으로 체크한 경우에만 아래 표시
- 경과조치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 미해당인 경우에는 “최초발주형태 및 입찰공고일/도급계약일자” 비활성화 됩니다.
  - 경과조치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① 최초 발주형태 : 입찰공고  도급계약
    - ② 입찰공고일/도급계약일자  (달력표출)
- '입찰공고일/도급계약일자'가 20180801이후(8.1포함)로 입력된 경우 오류메시지가 표출됩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전자고지 신청화면

- ①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가 '해당'으로 체크한 경우,
- 알림팝업(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시 EDI고지로 발송되고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화면하단 전자고지 수신 EDI(전자문서 교환시스템)에 자동체크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 화면하단 수신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자동표출
- ※ 빈값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 팝업 표출

○ 국민연금

- ①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 ② 『가입대상자 수』와 『적용연월일』을 입력합니다.
- ③ 분리적용사업장일 경우 『해당』을 선택, 본점 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b>국민연금</b>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개인사업장: 대표자 미포함		대표자 포함	
근로자수		7 명	가입대상자수		6
적용연월일		2016-06-01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미해당
본점내역 (모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input type="text"/>	사업장명		<input type="text"/>
	사용자	<input type="text"/>	※자동처리 항목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선택하고, 본점내역(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분리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 '미해당' 선택

○ 건강보험

- ① 『적용대상자 수』와 『적용연월일』을 입력합니다.
- ②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사업장일 경우는 반드시 아래의 『회계종목』을 선택 입력합니다.

<b>건강보험</b>		대표자 포함			
적용대상자수		7 명	적용연월일	2016-06-01	
사업장특성부호		일반근로자사업장	본점 사업장 관리번호		<input type="text"/>
회계종목 (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input type="text"/>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장의 신청서를 건강보험으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2.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4대보험기관 담당직원이 해당 신고서 처리 시 필요한 행정정보 이용에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신고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 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 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일	2016-06-10
신고(신청)인 (사용자-대표자)	김OO

위와 같이 신고(신청)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장 귀하

※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시 해당기관에서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추후 수염으로 통보합니다.

입력 완료 후 [저장]을 클릭하면 다음화면에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버튼이 생성됩니다.

**저장**

[ 4대사회보험 기관별 업무안내 ]

담당 기관	안내전화 / 홈페이지	해당 업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고유 업무
	www.nps.or.kr	
	edi.nps.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 업무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고유 업무
	www.nhis.or.kr	4대보험 보험료 징수관련 업무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등
	si4n.nhis.or.kr	
edi.nhis.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건강보험 고유 업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고유 업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고유 업무
	www.kcomwel.or.kr	
	total.kcomwel.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고용·산재 고유 업무
사회보험 EDI	080-318-5306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등
	www.ktedi.com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63-711-7800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등
	www.4insure.or.kr	

1.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 개선 취지는 무엇인가?

-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활동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직은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노후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일반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실업크레딧\*의 혜택도 보실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세부내용은 별첨 3 참조

2.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유리하겠지만 영세건설업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일반 일용근로자는 2015년도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일원화하여 건설일용근로자도 연금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 다만,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설업체도 10인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점의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건설현장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경우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세부내용은 별첨 4 참조

- 건설업체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적용기준」에서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요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사후정산요율) 2.49% → 4.5%

### 3. 법령 개정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

- 종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대상이었으나,
- 2018.8.1.일 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됩니다.
- 다만, 경과조치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2020.7.31.까지 종전규정(월 20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을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사업장) 법령 시행일('18. 8. 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기준을 2020. 7.31.까지 적용합니다.

### 4. 경과조치 사업장의 판단 및 인정 기준은?

- 사업장 성립 신고 시에 제출했던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 전자고지 신청서”로 변경되었고, 동 개정서식에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추가하였습니다.
- 경과조치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원도급 공사계약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 1종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 필수 제출한 공사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추가서류 제출 생략
  - \* 하수급자 사업장의 경과조치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 5.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가입해야 하나?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체류 하더라도 국적에 따라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유족·장애연금 등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18.7.5~7.12.까지 8일만 근로한 경우 가입 여부?

- 일용근로자의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근로계약서가 1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공사기간인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이고 3개월 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8일 이상 근무한 월만 가입해야 하나?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고용된 때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경우는 실제 근무일수 산정하여 가입대상을 결정

8. (둘 이상 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A사업장에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였으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근로하고, 동월에 B사업장과도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였으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근로하면 어떤 사업장으로 가입해야하나요?

- 양쪽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장 가입기준을 충족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9. 건설일용근로자는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데 매달 변경되는 소득을 변경할 수 있나?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매월 실제 소득에 맞게 소득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부마감일(다음달 10일)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음달 5일까지는 변경신고해야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0. 건설현장 사업장인데 EDI이외에 팩스나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소득변경이나 취득·상실신고가 가능한가?

- 건설현장사업장은 다음달 5일까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취득 신고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EDI로만 신고해야합니다.

11.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를 해야 하나?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이 공단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월 8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사업장에서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는 무엇인가?

-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처리 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 이후라도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131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 수급기회를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이하자
  - \* 지방세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 종합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원 이하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
-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
  - \* 국민연금기금 : 25%, 고용보험기금 : 25%, 일반회계 : 25%
- (지원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상한 )
  - \*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 □ 사업 추진절차

- 실업크레딧 신청(구직급여 수급자→공단 또는 고용센터) ⇒ 보험료 부과(공단 → 구직급여 수급자) ⇒ 보험료 납부(구직급여 수급자 → 공단) ⇒ 보험료 납부 확인(공단) ⇒ 국고지원(고용노동부→공단)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 지원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 지원내용

- (지원기준) 10인 미만<sup>1)</sup> 사업장의 월 기준소득 190만원<sup>2)</sup> 미만 근로자로 재산<sup>3)</sup> 및 종합소득<sup>4)</sup> 기준 미만자

1) 건설현장사업장은 본점 10인 미만이고 건설현장 사업장 10인 미만

2) 지원소득 상한액 : ('12년) 35만원~125만원 → ('13년)130만원 → ('14년)135만원 → ('15~'17)140만원 → ('18)190만원

3) 지방세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4) 근로소득 연 2,508만원 미만,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연 2,28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90%(5인 미만 사업장)/ 80%(5인 이상 사업장),  
[기존가입자] 보험료의 40%

- (지원방법) 사용자 신청으로 보험료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 □ 사업 추진절차

- 보험료 지원 신청(사업장) ⇒ 보험료 지원 결정 통보(공단 → 사업장)  
⇒ 보험료 납부(사업장 → 공단) ⇒ 보험료 납부 확인(공단) ⇒ 보험료 국고지원(고용부 → 공단)

□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함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 민간건설 공사는 2008.1.1.부터 적용할 수 있음

□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